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4
----------	------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 의 의 원 :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재우 의원

박갑상 의원

이영애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 개정된 민법의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있어서 치매인구가 증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구 및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로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고 배려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바. 성년후견제도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민법」 제9조)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시장은 구·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민법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